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VI)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물건에 한함

-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소멸성 순수보장형 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2) 일반 상가 및 공장물건에 대해 실손보상형으로 판매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

보장종류		보험금 지급사유
기본보장	풍수해·지진재해	보험기간 중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을 제외)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기본 담보 및 보상금액

기본계약	지급금액	지급기준
풍수해·지진재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보험기간 중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을 제외)
잔존물제거비용	보험금의 10%한도	풍수해·지진재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단, 풍수해·지진재해 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손해방지비용	보험가입금액 과 별개로 추가 지급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잔존물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약관 제 12조(잔존물)에 따라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자기부담금액

기본계약	공제금액	공제기준
풍수해·지진재해	20만원	약관에서 정한 손해 발생시 1사고당 해당 자기 부담금액 공제

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 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해당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풍수해·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4. 풍수해·지진재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재해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6.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8.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 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인한 손해
9.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10. 풍수해·지진재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11.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지진재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2.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이미 진행 중】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험료 산출 예시

구 분	주 택
가입조건	- 지역: 경기도 용인시 (시군구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 가입면적: 66㎡ (상가), 1급 구조 - 보험가입금액 : 시설 및 집기비품 5천만원, 재고자산 5천만원 - 자기부담금액 : 20만원
주민부담분 보험료	54,100원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경우 같은 조건이라도 지역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료는 메리츠화재 지점을 통해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산출기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 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약

이미 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2) 그 밖의 해약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7. 기타 알아두실 사항

Q) 실손보상형 상품에서 실손보상이 무슨 뜻인가요 ?

A) 실손보상 원칙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Q) 실손보상형에서도 손해액을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실손보상형 보험에 가입할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

A) 손해액의 일부만을 보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설정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억원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였는데 실제 손해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최대 1억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복구지원금 외의 구호비·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Q) 자기부담금이 무엇인가요?

A) 사고 발생시에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의 일부를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시에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설정하였다면 사고시 보상되는 금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상기 내용은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